

### 【질문 3】 개성공업단지 진출기업에 대한 과세관계

#### 1. 개성공업단지(開城工業團地)

황해북도 개성특급시(黃海北道 開城特級市)에 위치해 있으며 2002년 11월에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면적은 66㎢에 이르며, 2016년 2월 10일 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한국측에서 125개사가 입주하였고, 종업원도 북측에서 54,988명, 남측에서 820명(자료 : 통계서비스 기록과)이 근무하였습니다.

#### 2.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 (1) 남북경제협력과 세금에 대한 기본원칙

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북한의 외국인세금법 등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국인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과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및 제 2항), 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거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 (2) 이중과세 방지합의

남한과 북한 당국은 조세조약의 형식이 아닌 합의의 형식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는 거주자의 판정기준,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소득별로 원천지 판단기준과 과세권 배분 규정, 이중과세 방지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의서 제 22 조 제 2 항)하는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고 남한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 2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1개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외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업종분류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게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 제 2호가 기존의 ‘제조업’에서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개정하였으며, 2017년 2월 7일 동법 시행령에서 제조업범위를

신설하였고, 2019년 3월 20일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도 제조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26 조, 시행령 제 23 조 제 18 항)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기본공제(중소기업 3%, 중견기업은 수도권 1%, 그 외 지역 2%)

㉡추가공제

수도권 3%(중소기업 6%, 중견기업 5%), 수도권 밖 4%(중소기업 7%, 중견기업 6%)

3)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24)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감면,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 3. 북한의 과세체계

(1) 일반적인 과세체계

북한은 1974년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3차 회의에서 주민에 대한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사업활동 내용에 따라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와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체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특례부여

북한은 현재 29개 경제특구를 두어 그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과세상 특례제도가 있으며, 개성공단은 개성공업 지구법에 의하여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세금법과 세금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세금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종류별 내역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기업소득세	개성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	결산이윤	14% (일반업종)  10% (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 등 장려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려·생산부문투자 : 15년 이상 운영하는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5년 면제, 이후 3년은 50% 감면</li> <li>서비스부문 투자 :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 연도부터 2년, 이후 1년 50% 감면</li> <li>이윤재투자 : 3년 이상 운영 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 세금에서 감면</li> </ul>	
개인소득세	개성공업지구에 184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은 개인	월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의 500USD 이상일 경우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면제</li> <li>북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또는 소득면제</li> <li>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 예금의 이자소득 면제</li> </ul>	
재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개성공업지구 내 영구건물 소유자	건물 용도별 취득 시 현지가격	0.1~1%	새로운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상속세	개성공업지구 내 재산을 상속받은 자	세금규정에서 정한 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상속재산액	6~25%	-	
거래세	생산부문의 기업	생산물의 판매수익금	1~2% (다만 술, 담배, 기타 기호품 등은 15%)	생산제품을 남측으로 반출하거나 다른나라에 수출할 경우 면제	
영업세	서비스부문 기업	상업, 금융 등 부문별 봉사수입금과 건설물 인도 수입금	1~2% (단, 오락부분은 7%)	하부구조 부문 기업 면제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용수, 도로 부문)	
지방세	도시 경영세	개인 및 기업	기업 : 월노임총액, 개인 : 월수입총액	0.5%	-
	자동차 이용세	매년 1월 1일 현재 개성공업지구 내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	자동차종류	3~60 USD	60일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사용 기간 면제

관세면제 : 개성공업지구 내 반출입 물자를 포함한 남북교역물자는 관세 면제

※참고

(1)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0년 12월 16일 작성)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全文 28조)

(2)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 1호로 채택(全文 86조)